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

- **부 령 :** 제130호

공포일자 : 2010. 1. 15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02-2100-5334)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우수인력에게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방화관리자 등이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교육비의 반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1983호

공포일자 : 2010. 1. 7

담당부서 : 자원재활용과(02-2110-6953)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itm.g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인 환경기준 및 자동차 생산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엔진 내의 베어링 셀에 사용되는 납, 전조등의 형광램프에 사용되는 수은 등을 한시적으로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대상으로 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개정안내

○ 법 률 : 제9931호

공포일자 : 2010. 1. 13

담당부서 : 재정금융정책관실(02-2100-2369)

전문참고 : 국무총리실(www.pmo.go.kr)

○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5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 나.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다.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 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 바.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하되,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
- 사. 정부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과 사회·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제53조, 제57조 및 제59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환경영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개정안내

● 법 률 : 제9933호

공포일자 : 2010. 1. 18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과(02-2110-3943)

전문참고 : 자식경제부(www.mke.go.kr)

●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5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경우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로 소비자의 권리 및 공사의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동일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동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열 생산시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강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사항을 법률에 구체화함(안 제6조 및 제20조).
- 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주 1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 다. 동일인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국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임원 임명절차,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5조제3항, 제37조 및 제38조 삭제).
- 바. 동일인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5조제5호 신설).

● 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및 제5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10-9호

예고기간 : 2010. 1. 21 ~ 2. 10

담당부서 : 방송통신녹색기술팀(02-750-2196)

전문참고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 제안이유

주택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도 지하 인입을 의무화하고 계약해지 후에는 가공(架空)으로 인입된 선로를 철거하도록 하며, 건축물 지하층에서의 편리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광섬유케이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옥외회선의 건축물 지하인입 의무화 및 계약해지 후 가공(架空)인입선로의 철거 조항 신설

- (1) 주택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가공선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회선 인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2)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인입할 경우에도 지하인입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인입배관을 사업자가 이용하는 입주 등까지 설치하도록 하며, 계약해지 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공으로 인입한 선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철거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로 인해 동일한 설비에 대한 설치방법이 사업자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3) 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외회선 인입 등 설치방법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기대됨

나. 건축물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조항 신설

- (1) 건축물의 지하층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향상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 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구축이 필요함
- (2) 건축물의 지하층 중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3) 건축 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보다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하층의 보안문제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의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구내통신회선으로 광섬유케이블의 선택적 설치기준 도입

- (1)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확산에 따른 가입자망의 대용량 전송용량 확보를 위해 건축 시 기존 동선 외에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필요 있음
- (2)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에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을 보완하고 해당 조항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를 신설함
- (3)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로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FTTH 방식의 가입자망을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구내통신설 면적확보기준 정비

- (1) 구내통신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적확보기준을 정비할 필요 있음
- (2) 업무용 건축물의 충구내통신설을 동일층에 2개 이상으로 분리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구내통신설의 시건장치, 실효면적,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면적의 추가 등 구내통신설 면적확보기준을 정비함
- (3) 건축물의 충별 구조 등을 고려한 구내통신설 설치규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홈네트워크 설비용 구내통신설 확보면적을 명시하여 다양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 올해 산자부고시 제159호의 공동주택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중첩도평가 중 6개소 미만일 때 4점을 부여하는데요.

- 현재 5개소현장의 비상주감리원이 신규공고 용역에 PQ로 참여해도 4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하는 용역을 포함하여 현재5개소 + 참여용역 1개소로서 총 6개소로 보고 3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확실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③항에 의거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또 다른 공사의 자연등 감리업자에게 책임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제27호의4서식에 의해 공사감리완료 보고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08년 04월 30일부로 완공 된 재건축아파트 현장인데 발주자의 사유로 완료보고서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은 2008년 04월 28일부로 준공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다른 공사의 자연등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감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공사완료보고서 확인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감리업자는 과태료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지? 사업주체가 공사완료보고서 확인을 해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를 알고 싶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들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협회 위탁)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고시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는 다른 공사 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복복 배치한 현장개소로 구분되므로 당해 공고용역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PQ고시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여 모집공고시 제시한 경우라면 당해 공고내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6. 16)

•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감리완료보고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위 조문의 개정(2007. 11. 23)은 공사감리완료보고 지연에 따른 무분별한 행정처분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발주자에게는 공사감리완료 확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공사감리완료보고 제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6. 24)

- 3**
- 최초 감리용역비 계약조건(2004년 1월 계약)
총 공사비(자재비 + 도급분)
 - 설계변경 (2008년 5월) 감리용역비는
 - 종전기준에 따라 공사비(자재비 + 도급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나 2006년 7월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도급분으로 감리용역비를 산출하도록 되어있음
 - 2006년 7월 이전 계약 건이므로 종전기준(총 공사비(자재비 + 도급분))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기준(도급분)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전공사 감리용역설
는 전력기술관리법 12조3항 및 동법시행령
22조2항 별표3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1. 배전공사는 총공사비50억원 미만은 책임감리원이 중급이상, 보조는 초급이상으로 되어있으나 한전은 별표3 주)를 폭넓게 원용하여 모든 배전공사 감리용역에 활용하고 있는바(배전설비의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한다는 미명 아래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2. 일부배전공사는 특수 기술 및 특수공법이 아닌 일반배전공사(지장전주이설, 삼상화공사, 변전소 회선인출공사 등)로 관리법에 명시한 중급도 가능(중급감리원도 20~30 여년의 경력자) 한데 한단계씩 상향 조정함은 법의 취지(평등의)에 맞지 않음.(한전배전공사의 95%이상이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임)
3. 요즘은 기름값이 하루가 달리 오르고 있는데 감리비 1억원 미만은 차량운영비를 계상치 않고 있는바(귀부 고시에 의한다함) 실 감리기간은 차량 운영비를 계상하여 주시(법도 아닌 고시인데 폐지하여)고.
4. 우리나라로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사회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감리원은 65세 넘으면 감점을 주어 불이익으로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여 실질적으로 실업자 양산 시책이니 철폐하든지 연령을 상향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에서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에는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비고 제4호에서 배전공사는 감리원수의 100분의 25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었으나, 발전·송전설비공사 등과 동일하게 제작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2006. 7. 5)되었으며, 부칙 제2항에 이 요령은 공포후 최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리대가 조정기준은 당초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운영요령 제15조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6. 9)

• 감리원 자격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감리원 배치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지 차량비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조제2항은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현지 차량비, 현장 운영경비를 직접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연령감점에 대하여)

- PQ고시의 연령감점은 원활한 감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6. 9)

생활속 법령상식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은 현 상태(대지)가 아닌 무허가건축 당시 등의 이용상황(임야 등)에 따라 보상 받는다.



Q 본인은 약 10여년전부터 본인 소유 토지(지목상 임야) 위에 무허가로 간이건물을 짓고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최근 본인 소유 토지 일대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수용보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본인 소유 토지를 “대지”가 아닌 “임야”로 평가하겠다고 한다. 비록 무허가 건물이지만 10여년간 음식점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임야”라니 이해가 안된다. 대책은?

글 박종복 변호사

A 결론적으로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의 부지라면 “대지”로 평가받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 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위 토지를 음식점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도 객관적인 이용상황으로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위 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불법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임야 등)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귀하가 비록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10여년간 음식점으로 이용하여 왔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없었다면 위 건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이고 건축물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 부분도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여지므로, 위 무허가건축물 건축 당시 또는 토지 불법형질변경 당시, 즉 10여년전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